

고소 이유

1. 당사자 관계

고소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또는 '고소인'이라 합니다)이고, 대표자는 위원장 윤창현입니다.(증 제1호증 언론노조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 권성동(이하 '피고소인'이라 합니다)은 국민의힘 당원이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2. 고소 사실

가. 피고소인의 2022. 7. 14. 발언

피고소인은 2022. 7. 14.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시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 발언을 하였습니다.¹⁾ (증 제2호증)

증 제2호증 2022. 7. 14.자 KBS 최강시사 권성동 인터뷰 내용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 2022. 7. 14.자 다시듣기 링크

https://vertical.kbs.co.kr/popup.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R2021-0014&program_id=PS-2022119099-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99

▶ 권성동 :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습니까?

▷ 최경영 :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 권성동 : 사실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

▷ 최경영 :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해 버리면 그러면.

▶ 권성동 :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 KBS하고 나하고 논쟁할 건 아니지만.

▷ 최경영 : 그렇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다 따로 있다는 거죠.

▶ 권성동 : MBC 같은 것도 보세요.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이지만.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고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자신들이 좌지우지했던 방송이 지금 야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① ‘KBS와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이하 ‘제1발언’이라 합니다). ② 이에 최경영 기자가 KBS와 MBC를 민주노총 산하 조직원이 장악했다고 하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금 ‘사실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재차 강조하여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이하 ‘제2발언’이라 합니다), ③ 그 근거로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MBC)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이하 제3발언 ‘이라 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2022. 7. 15. 발언

피고소인은 위 <최강시사>에서의 발언을 한 다음 날인 2022. 7. 15. 국회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공정방송 국민 감시단이 20대 대선 선거 과정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책자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위 최고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날 위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증 제3호증).

증 제3호증 권성동, 이틀째 언론과 일전... "MBC 불공정", "어디 기자냐?"

권 원내대표는 전날 '그의 MBC·KBS 민주노총 장악 발언'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경도된 게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람이 많아서냐'고 묻는 기자에게 "민주노총 산하 연노련(언론노조) 핵심 간부 출신들이 지휘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하며 "KBS 기자시죠?"라고 물어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기자가 "네"라고 답하자 권 원내대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냐. (간부들이) 다 연노련 출신"이라며 "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로서 진짜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내가 진짜 특정 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책자를 보시고 방송 보도를 보라. (그리고) 젊은 여러분이 시정하러 나서길 바란다"고 기자를 훈계하기도 했다.

① 전날 피고소인이 <최강시사>에서 한 'KBS·MBC의 민주노총(언론노조) 장악발악'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이 경도된 이유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람들이 많아서냐고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피고소인은 전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노련(언론노조) 핵심 간부 출신들이 지휘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이하 '제4발언'이라 합니다). ② 그에 이어서 '특정 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책자(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했던 불공정 방송 모니터링 책자)를 보시고 방송보도를 보라. 젊은 여러분이 시정하러 나서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이하 '제5발언'이라 합니다).

다. 소결

요컨대,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다 좌지우지하며 장악하고 있다.’(위 제1, 2, 4발언)고 하고 있고, 이러한 언론노조 때문에 KBS·MBC 등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발언하고 있습니다(위 제5발언).(이하 ‘이 사건 고소대상 발언들’이라 합니다)

그러나 위 피고소인의 언론노조에 대한 발언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좌지우지하며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의 근거로는 ‘KBS와 MBC 사장이나 지도부 등 간부들이 언론노조 핵심 간부 출신 사람들이다.’(위 제3, 4발언)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이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을 하고, 불공정·편파방송에 영향을 미친 것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하 상술합니다.

3. 이 사건 고소대상 발언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관련 법리

1)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의 ‘사실 적시’ 여부와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나아가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명백히 하며 관련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 2) 한편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민사, 형사 불문)에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이 사건 피고소인)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민사사건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하와 같이 형사사건에서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이 사건 피고소인)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피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대상 발언은 언론노조(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 1) 피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대상 발언들은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의 구체적 사실들을 적시하고, 또 그 전제사실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방송편성에 관한 일체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방송법 제4조 제1, 2항), 방송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의 독립과 공정보도 원칙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방송의 독립을 침해하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언론의 공적 책임에 반하는 불공정·편파보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불공정·편파 보도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든 사회적·윤리적으로든 비판받아야 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다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며 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언론노조 때문에 KBS·MBC 등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노조가 KBS, MBC를 좌지우지하며 방송장악을 하고 있음은 물론 불공정·편파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언론노조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내용들입니다.

2) 그러나 위 피고소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정보도 및 언론 독립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 투쟁을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령 1호에서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약에서도 편집권 독립, 공정언론·공정보도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언론 독립과 공정보도 실현을 주된 조직활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 제4호증 언론노조 강령
1.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증 제5호증 언론노조 규약
제4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27조(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2. 민실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별도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28조(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민실위는 2001년 11월 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 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 민실위는 공정보도를 위해 설립한 대안적 언론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위와 같은 강령과 조직활동 목표에 따라 언론(방송)의 독립과 보도의 공적 책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피고소인의 위 발언처럼 언론노조가 KBS, MBC를 좌지우지하며 불법·부당하게 방송장악을 한 사실도 없고, 불공정·편파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발언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 3) 한편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KBS, MBC 경영진 중 일부가 언론노조 조합원·간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언론노조 출신의 몇몇 KBS, MBC 경영진의 행위와 언론노조(별도 법인 등기된 노조법상의 조직인 언론노조)의 행위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위 경영진들은 현재 언론노조 조합원도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노조의 행위도 아니고,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근거 사실로 볼 수도 없는 KBS, MBC 경영진 일부가 언론노조 출신이라는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언론노조가 방송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부당의 방송장악 행위를 하고, 편파·불공정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피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대상 발언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소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존재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4) 위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언론노조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위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언론노조가 KBS, MBC 등의 방송장악을 하고, 불공정·편파 보도가 언론노조 때문인 것처럼 오해되며 그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노조는 언론독립과 공정보도 실현을 주된 조직활동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큼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 피고소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이고, 이를 공연히 유포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3. 결어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국민의힘(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큰 영향력이 있어 위 피고소인의 발언은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온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는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까지 고려하시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